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8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4.

발 의 자 : 김재원 · 신장식 · 최혁진
 · 용혜인 · 황운하 · 박은정
 · 한창민 · 강경숙 · 임오경
 · 손 솔 · 윤종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·의무,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·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.

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3제1항 중 “선수가”를 “선수 및 체육지도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“선수와”를 “선수 및 체육지도자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체육지도자의 표준계약서 체결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(갱신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3(표준계약서의 작성 등)	제10조의3(표준계약서의 작성 등)
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·운영되는 운동경기부(이하 “직장운동경기부”라 한다)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<u>선수</u> 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선수 및 체육지도자가</u> ---- ----- ----- -----.
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<u>선수</u> 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,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선수 및 체육지도자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